

부산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1가단311711(본소), 2022가단337307(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전서현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9.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074,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5,124,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배전반 제조업, 전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0. 경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기수배전설비 교체계약(큐비클 제작+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공사대금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된 견적서(갑 제2호증의2)를 피고에게 준 사실이 있고, 다시 총 공사대금 59,807,5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된 견적서(갑 제2호증의3)를 교부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21. 1. 10. 경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공급가액 57,000,000원으로 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8,788,250원(59,807,500원×1.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반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큐비클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85,124,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 요지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 하자(① 2중천정을 하지 않은 부분, ② 큐비클 장식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공하지 않았음, ③ ATS를 설치하지 않았음, ④ 큐비클 옆면 1면을 설치하지 않았음), 오시공 하자(① 외함의 두께가 제작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음, ② 큐비클을 40cm 가량당겨서 시공하지 않음, ③ 큐비클 전체를 고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④ 변압기 2대를 고정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기능상하자(① 큐비클 전체에 누수현상이 심함, ② 큐비클 도장이 잘못 시공되어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능상 하자가 본질적이고 나머지 하자는 장식적인 것이고(감정인은 장식적 하자는 숫자가 많지만 보수 비용은 껌값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기능상 하자의 보수방법은 재설치·재시공이라고 판단하였다. 감정인은 보수방법의 결정 근거에 대하여, (이 하자를)『장식적(裝飾的)인 하자로 취급하여 부분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사를 이 사건 현장에서 시공한다고 하면, 녹과 페인트를 제거할 때 생성된 분말(粉末)이 비산(飛散)하여 생긴 진애(塵埃)가 주변 건물로 날아갈 텐데, 부산광역시의 도심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환경성(環境性) 민원이 쇄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는 본질적(本質的)인 하자라는 의견으로 회신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인은 재설치·재시공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59,807,500원에다가

큐비클철거비 2,320,000원(전기설비공사 견적서 비용 11,600,000원의 20%), 환경처리비 928,000원(큐비클철거비의 40%)를 더한 다음 물가변동비 22,069,425원(더한 금액 63,055,500원 × 최근 3년간 물가변동율 35%)를 더하여 85,124,925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산출했다.

[인정근거]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나. 본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견적서(갑 제2호증의3)가 원고가 실시한 공사와 일치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는 감정인에게 두 개의 견적서를 모두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59,807,500원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큐비클에는 미시공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장식적인 하자로서 그 보수비용도 미미하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므로 공사 완료사실도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8,788,250원(59,807,500원×1.1-17,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30.까지는(반소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본소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감정인의 감정 취지에 비추어 기능상 하자(① 큐비클 전체에 누수현상이 심함, ② 큐비클 도장이 잘못 시공되어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의 존부 및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옥외용 페인트를 추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색상의 옥내용 페인트를 선택하여 도색을 요청한 것으로 옥내용 페인트를 사용하여 발생한 녹 및 부식은 피고의 잘못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배전반이 옥외에 설치되었음에도 옥내용 페인트가 칠하여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옥내용 페인트 사용을 요구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설령 비전문가인 피고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그대로 따랐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누수와 녹이 상당 정도 관찰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의견(“큐비클내 · 외부에 빨갭게 생긴 녹 부식(腐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 “향후 5년 이내에 큐비클내 · 외부가 샅빨갭게 녹이 슬어 큐비클 고유의 색이 아니라 꼬마 증기기관차를 방치할 때 생긴 송송뚫린 겉철판과 같이 보여 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큐비클에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보수방법에 대하여 본다.

감정인이 전면철거 재시공을 보수방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앞서 본바와 같이 “도장공사를 현장에서 시공하면 녹과 페인트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분말이 흩어져 주변건물로 날아가는데 부산광역시의 도심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실행되면 환경성 민원이 쇄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조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감정목적물이 설치된 옥상에서 비산하는 분진의 대기오염방지대책 마련없이 견적서대로 시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환경관련 민원이 해당 구청 또는 해당 경찰관서에 제기될 것이 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견적서 1장의 금액 4,500,000원대로 페인트 도장만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의 발상은 민망(民望)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감정인은 견적서 내용이 싫다는 의견으로 회신합니다”고 하여 종전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회신하였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인이 보수방법으로 철거 후 전면재시공을 제시한 주된 논거는 환경성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감정인은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 전기철도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환경관련 민원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도장공사에 대한 전문가로도 볼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기술적 어려움이나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는 것이 아닌 ‘민원발생’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수방법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로서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도심지역에서도 통상 도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에 공사에

대하여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이 그점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될 사정을 알 수 없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한편, 이 사건 큐비클에 상당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감정인의 의견은 믿을 수 있고 이 사건 큐비클이 전기설비관련시설이므로 교체 전면 재시공이 가장 원천적인 해결방법임은 상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감정인은 이 사건 수배전반에 존재하는 다른 하자는 장식적 하자로 보수비용이 매우 적다고 하면서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 결과 법원으로서도 달리 보수비용에 대하여 산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큐비클을 설치한지 2년 정도 경과한 점, 손해발생과 액수 증명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취지를 보태어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의 60%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한다2).

[계산]

○ 원금: 51,074,955원{85,124,925원([인정근거] 감정인 D의 감정결과) × 60%} ○ 지연손해금: 반소장 부분송달일인 2022.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1) 원고는 위와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원인 기재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47,3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2022. 1. 12.자 준비서면 말미).

2) 더하여 금액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감정인은 원고가 산정한 공사대금에 별도로 큐비클 철거비를 산정했는데, 원고의 공사대금에는 기존 큐비클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감정인이 왜 ‘전기설비공사 견적서 비용’을 기준으로 큐비클 철거비를 산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공사시점으로부터 감정일 기준 1년 7개월 가량 경과하였는데 감정인은 3년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35%의 비용을 더하였다.